

제325회 정례회
2013. 12. 11.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◎ 충청북도 사회복지사등 처우
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사회복지사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병윤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3년 10월 30일
-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6일

3.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충북지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 하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3년 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도록 함 (안 제6조)
- 마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(안 제7조)
- 바.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동기 및 경과

- 본 조례안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이 2012년 11월 시행 되었지만,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역 복지단체 및 전문가들의 요청이 있었고, 이에 수차례의 민·관 협의를 거쳐 제정하게 됨.
- 주요 추진 경과
 - 1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('12. 9.11)
 - 참석인원 : 사회복지 전문가(6명) 및 소속 위원
 -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('13. 4.15)
 - 참석인원 : 자문위원(3명) 및 소속 위원
 - 2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('13. 6.27)
 - 참석인원 : 사회복지 전문가(6명) 및 소속 위원
 - 집행부 및 입법팀 의견수렴, 비용추계('13. 7. 1 ~ 7.31)
 -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주관 -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('13. 8.26)
 - 참석인원 : 사회복지사 등 120명
 - 입법예고 20일('13. 9.26 ~ 10.15)

나. 타지역 조례 제정 현황

- 14개 광역시·도에서 조례 제정
 - ※ 미 제정 지역(2개 시·도) : 서울, 충북

다.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,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제2항에 의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고,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이 가능함.
- 조례안 세부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기준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하는 “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”으로 규정함. 또한 3년 단위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활용한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, 사회복지사의 신분안전 및 신분보장을 위한 시설장 및 지사의 책무를 명시함.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, 포상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.
- 그 간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대표발의자인 최병윤 의원 주관으로 충청북도 사회복지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, 충청북도 여건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.